

- 협동조합 인증 촉탁 시 구비서류 -

1.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
2. 진술서 (별지1. 서식)
3. 설립동의자(조합원) 명부 (별지3. 주주명부 서식 수정하여 사용가능)
4. 정관 사본
5. 사업계획(안) 수입·지출예산(안) 사본
6. 확인서 (별지2. 서식)
7. 위임장 (별지4. 서식) - 참석 설립동의자 전원 위임(인감도장 날인)
8. 개인인감증명서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★ (별지1. - 별지 4.)서식이 필요한 경우 바른길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.

다운 경로 : 법무법인(유한) 바른길 홈페이지(<http://www.barungil.co.kr/>)에서 →
업무분야 중 ‘공증·등기’클릭 → ‘4.공증서식’ 의 의사록 관련 서식 다운 받기.

(※ 의사록 인증 촉탁 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.
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십시오.)

[기타 법인 의사록 참고사항]

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사록,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총회의사록,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,
재단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인증 시에도 주주총회의사록에 준하여 구비하여 오시고,
적합한 용어로 변환하여 작성토록 함. (예: 주주명부 ▶ 조합원명부, 사원명부 등)

※ 본 공증사무실에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춰가지고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
인증절차를 거쳐드리는 곳입니다.

세부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공증사무소에서는 상담하지 않으니 작성방법을
모르시는 분은 법무사 사무실로 별도 문의하시어 완성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